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12. 0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11.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9.11.19.

다. 상정일자 :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09.11.27)

상정, 심사, 보류

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09.12.09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 창 수 가정복지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보육정보센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1)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(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)

마포보육정보센터 신축에 따른 센터 내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신설  
2)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(안 제39조)

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게는 구청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

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함(안 전체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▣ 본 조례안은 2010. 1 마포구 보육정보센터 개관에 대비하여 조례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, 보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 표창근거를 신설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였음.

▣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제명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” 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내용이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초등학교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” 로 하고, 안 제1조 목적에서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” 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 등에” 로 수정을 요함.

안 제5조제2항제5호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“마포구의회 의원” 을 규정하였으나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3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

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“마포구의회 의원”을 삭제하고, 안 제6조제5호 중 “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”는 법 제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“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”로 하며, 안 제6조제6호 “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”은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“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을 요함.

안 제9조제1항 중 “그 사무를 통할한다.”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정기회”는 “정기회의”로, “임사회”는 “임시회의”로 각각 수정하며,

안 제13조제5항제1호 중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”는 “수급자”로, 같은 항 제5호 “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”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여 삭제를 요함.

안 제20조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은 입법체계상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안 제25조제3항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규정하였으나 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“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”를 삭제하며, 안 제28조제1호 중 “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”는 시행규칙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“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”로 조문정리를 하고,

안 제31조제4호는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“보육 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, 같은 조 제5호는

법 제25조제3항제5호에 따라 “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”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안 제32조 중 “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” 는 법 제27조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여 “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” 로 하고, 안 제33조의 제목 “보육시설 설치” 는 “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” 로 하며, 같은 조 본문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상의 복지시설” 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” 로 하고,

안 제34조의 “규칙” 은 “시행규칙” 으로, 안 제41조에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별표의 제목 중 “사용료 등(제13조 관련)” 은 “사용료 등 세부기준(제13조제4항 관련)” 으로 하고 [별표] 용도 중 “영어교실 프로그램 이용” 은 “외국어교실 프로그램 이용” 으로 범위를 확대하며, [별표] 상담비란 중 “검사 및 검사결과 상담” 은 발달, 지능 및 언어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